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의 독립성 확보 원칙 규정 〉
■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820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의 독립성 확보 원칙 규정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4
다. 관계 기관 의견	7

I. 개요

1.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82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안상훈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2. 12.
- (3) 회 부 일 : 2026. 2.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기금이 정치적 영향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본래의 목적과 달리 운용되거나 수익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의 목적을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의 극대화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지침」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다른 목적을 위해 운용되지 않도록 운용의 독립성 원칙을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원칙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구속력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가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 관리·운용 과정에서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이 전문성에 입각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102조제2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의 독립성 확보 원칙 규정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의 독립성 보장과 이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할 때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 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국가의 책무) ----- ----- -- <u>지급과, 기금 관리·운용의 독립성</u> 을----- -----.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생략) ② <u>보건복지부장관</u> 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 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u>보건복지부장관</u> 은 <u>기금 관리·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고</u> ----- ----- ----- ----- ----- ----- ----- ----- -----.

현행	개정안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1. ~ 7. (생략) ③ ~ ⑥ (생략)	----- -----. 1. ~ 7.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할 때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파적 고려나 특정한 이해관계 등을 배제함으로써 그 수익이 최대로 증대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참고로, 현행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매년 마련하여야 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6대 원칙으로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지속가능성 및 운용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운용 독립성’은 나머지 5대 원칙(수익성·안정성·공공성·유동성 및 지속가능성)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¹⁾

1)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4조(기금운용 원칙)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용한다.

1. 수익성의 원칙 : 가입자의 부담,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2. 안정성의 원칙 :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이므로,²⁾ 객관적 근거와 전문적 판단에 기초한 투자전략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키기 위한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다만,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그 방법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³⁾

개정안에 따른 ‘독립성’이 현행법상의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체계 중 어느 주체·절차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원칙인지가 불분명하고, 무엇으로부터의 독립과 자율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
3. 공공성의 원칙 :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기금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4. 유동성의 원칙 : 연금급여의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국내금융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5. 지속 가능성의 원칙 : 투자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6. 운용 독립성의 원칙 : 상기 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2) 「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이 장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3)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각 호 생략)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6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2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

독립성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선언하는 것 이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⁴⁾·운영⁵⁾이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법인화 등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거버넌스의 실체적 요소를 함께 정비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국가재정법」 제78조에서 국민연금기금은 ‘자산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하고, 그 법인의 조직·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연금법」에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⁶⁾

4) 「국민연금법」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②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 위원인 재정경제부 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산업통상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과 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나.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다.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4. 관계 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5) 「국민연금법」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이하 “투자정책전문위원회”라 한다)
2.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라 한다)
3.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이하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라 한다)

6) 「국가재정법」

제78조(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 ①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자산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의 조직·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연금법」에서 따로 정한다.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를 위한 독립적인 기금 운용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독립성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개념으로서 현행과 같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침(「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통하여 그 원칙을 규율하는 것이 적절함.

문 의 처
02)6788-5506

참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구성 (2026. 3. 기준)

구분	성명	소속·직위	추천단체
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문신학	산업통상부 제1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용자 대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한국경영자총협회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대한상공회의소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근로자 대표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태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정희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지역 가입자 대표	김기관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자산운용본부장	농협중앙회
	신황용	수협중앙회 기획부대표	수협중앙회
	김동철	한국공인회계사회 행정부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이한나	법무법인 허브 변호사	소상공인연합회
	강정화	(사)한국소비자연맹 회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기영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 전문가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한국개발연구원